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2005-49

발의연월일: 2005년 8월 일

발 의 자:이현영 의원 외 11인

1. 제정이유

거창군내에 산재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목재 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난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○지원범위를 거창군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인 주택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목재를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. (안 제2조, 제3조)
- ○지원금액은 소요액의 전체를 지원토록 하되,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며, 재래식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5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함(안 제4조)
- ○난방시설비지원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토록 하고,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함(안 제5조)
- ○지원결정후 부적격자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후 에도 허위의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 오염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목재를 사용하는 난방시설(이하 "난방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난방시설 설치 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인"이라 함은 「농지법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를 말한다.
- 2. "목재를 사용하는 난방시설"이라 함은 주택용 건물 신축 또는 개축시 온돌 및 온수공급을 위하여 목재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시설을 말한다.
- 3. "농업인주택"이라 함은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을 말한다.
- 3. "주소"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 거창군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

- 이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하고자 할 때에만 해당된다. 단, 1회에 한하며 농업인주택 중 본채 이외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.
- ② 신청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 이어야 한다.

제4조(지원범위) ①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난방시설의 기기대금을 말한다.

- ② 지원금액은 소요액의 전체를 지원하되, 지원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.
- ③ 재래식 난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) ① 난방시설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주 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「별지 1호」서식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, 읍·면장의 사실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7일 이내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원대상자는 주택 신축 또는 개축이 완료되면 난방시설의 공급계약서,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청구서류가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한다.

제6조(지원결정 취소) ① 지원결정 후에라도 지원대상자로 부적정 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을 지급 후 허위의 방법에 의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 군수는 지원결정 취소와 동시에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신청서							
신청자	성 명	연 락 처					
	주 소						
건축내역	건축내역	면적	m²	구 조			
	위 치						
	소유자			건축형태	내 신축, 개축		
	착공예정			준공예정일			
난방시설	설치예정자			설치예정금액			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신청인 :

거창군수 귀하

첨부서류	관련서류 1부.	읍·면	확인자
			읍면장(인)

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금 청구서

신청자	성 명		구좌번호
	주 소		
건축내역	건축내역	면적 m²	구 조
	위 치		
	소유자		
	준공일		준공일
난방시설	제품명		규 격
	설치자		소요액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난방 시설 지원금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청구인 :

거창군수 귀하

첨부서류	준공관련서류 1부.	읍.면장 확인	확인자
			읍면장(인)